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85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김예지·서미화·김소희

정성국 · 신성범 · 서천호

최수진 · 서범수 · 최형두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인하액이 직전 연간임대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
	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
	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
	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
	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
	우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
	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인하액이 직전 연간 임대료 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임대료 인
	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u>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
	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 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 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